

##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를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

안 창 욱

의료 & 복지뉴스 국장  
dha826@naver.com



---

〈편집자 주〉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이라는 명목으로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초지일관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동향 등이 심상치 않다.

이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언론인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



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과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16년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김필건 회장이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초음파골밀도기로 이용해 직접 골밀도 측정 시연을 한다고 그 전날 언론사에 사전 공지했다.

한 의사도 의사 못지않게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을 기자들에게 당당히 확인시켜 주고,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의사뿐만 아니라 한 의사도 CT, 초음파기기와 같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당시 메디케이트뉴스 데스크를 맡고 있던 필자는 두 명의 기자를 기자회견장에 보냈다. 창간한지 1년이 안된 터라 기자라고는 달랑 3명밖에 없던 시절, 한 행사에 2명의 기자를 투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사가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 큰 기삿거리를 건질 것 같은 예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그 때 전문지 기자 중 유일한 의사(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김두환 기자에게 기자회견장에 가면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에게 무조건 '의학적' 질문을 던지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기자에게는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 측정 시연 장면과 질의응답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지시했다.

필자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날 오후 12시를 갓 넘길 무렵 김두환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김 기자는 “김필건 회장이 오진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김필건 회장은 골밀도 측정값이 ‘T-score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김두환 기자의 질문에는 ‘능청스럽게’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 기자는 “시연 때 뼈의 어떤 부분을 측정하셨고, 나온 값에 따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해당 환자가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라!  
이게 무슨 어려운 내용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걸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나  
의협에서 한의사들을 고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나”고 물었다. 김 회장이 시연한 사람은 29세의 건장한 한의사협회 직원이었다.

그러자 김필건 회장은 “골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발목 쪽이죠. 아킬레스건을 중심으로 하는…그 쪽에 골밀도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기구”라고 얼버무렸다.

이에 김 기자가 다시 “골감소증인지 골다공증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김 회장은 “지금 현재 시연했던 분은 골감소증으로 봐야 한다.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려면 예를 들면 X선 같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필건 회장은 멀쩡한 청년을 골감소증 환자로 오진한 사실을 알지 못한 듯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큰소리로 당당하게 말했다.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라. 이게 무슨 어려운 내용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걸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나 의협에서 한의사들을 고발하고 있다.”

다음날 대한골대사학회 양규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필건 회장의 시연은 A부터 Z까지 모두 틀렸다”고 못 박았다. 양 회장은 “김필건 회장은 양쪽 복숭아뼈를 측정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왜, 어디서,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규현 회장은 T-score가 -4.4로 기록된 것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 정도 수치는 85~90세 노인, 그것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나 나오는 수준”이라면서 “50세 이상에서는 T값을 사용하지만 그 이하에서는 반드시 Z값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양 회장은 “초음파로 골밀도를 측정하려면 해부학을 공부하고, 뼈의 성질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 측정했고, 그 결과치를 임의로 해석했다.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 측정 시연은 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줬다.

얼마 뒤 김두환 기자는 김필건 회장의 오진을 확인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녹십자언론문화상을 수상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촬영한 동영상은 의협의 대국민 홍보자료로 널리 사용됐다. 그 무렵 한의사협회는 메디게이트뉴스를 비공식적으로 출입금지 시켰다.

필자가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부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김필건 회장은 양쪽 복숭아뼈를 측정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왜, 어디서,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초음파로 골밀도를 측정하려면 해부학을 공부하고, 뼈의 성질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 측정했고, 그 결과치를 임의로 해석했다. 이는 매우 위험하다.”**

**-대한골대사학회 양규현 회장-**

모 여성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한 한의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한 방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산부인과병원 초음파검사 에서 덩어리가 보이자 상급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이 내려졌다.

해당 한의사는 2년 3개월 동안 무려 68회 초음파 검사를 했다고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을까? 결국 환자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벌금 80만원 유죄를 선고했다.

평소 당뇨병이 있는 A씨는 왼쪽 발바닥 봉와직염 수술을 받고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내원했는데 한의사는 극초단파치료를 이용해 치료했다. 그외중에 발가락과 발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엄지발가락 절단과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담당 판사는 골대사학회 양규현 회장처럼 왜 한의사가 극초단파치료를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환자가 봉와직염 수술 후 발이 붓는 상태가 계속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한 것임에도 한의사는 당뇨병 등의 기왕증 여부, 부종의 원인, 발부위 감각 이상 여부 등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치료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면허의 독점성’을 훼손하고, 그 결과는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필자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의 아들



이 제 아무리 백이 좋고, 운전의 귀재라 하더라도 그가 2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이상 1종 대형트럭을 몰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를 용인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한 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다시 의대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한 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같은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 건강’ 운운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정상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 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절박한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사이버의료를 척결하고 근거중심 의료를 정착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한 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다시 의대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한 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같은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 건강’ 운운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정상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말기암’이란 단어 하나만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가 사이버의료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하긴 손금 진료한 한 의사에 대해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의뢰하자 동의보감에 그런 치료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나온 게 보건복지부인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긴 하다.